

단말기 구매 계약서

* 부분은 고객님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.

고객님의 소중한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신청서류 원본과 구비서류를 필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
대리점(위탁점)명 코드	상당사	연락처

단말기 구매 확인안내	단말기 모델명/일련번호		출고가		원
	※ 단말기 할부는 12개월 약정 가능합니다.		본인은 단말기 구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, 일시불, 할부 신용의 조건으로 단말기 구매 계약 체결을 확인합니다.		
	핸드폰대금 및 대금상환방식 선택에 따른 안내		[대금지급방식 : <input type="radio"/> 일시상환 <input type="radio"/> 분할상환 <input type="radio"/> 부분 분할상환]		※ 연 분할상환 수수료 (분할 상환 원금 잔액 기준 연 5.9%)
	출고가 (a)	계약금 (b)	추가지원금 (c)	[]개월 분할상환 원금	A. 핸드폰 월 납부액
	원	원	원	원	원
	포인트할인 (d)	고객수납금 (현금/카드 e)	분할상환원금 (a-b-c-d-e)	원	원
	원	원	원	원	원
※ 분할상환 구매 []개월 시 분할상환수수료는 총 []원이며, 일시불 구매도 가능합니다.					
일시불 신용 단말구매 계약의 대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하며, 일시불로 상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분할 또는 부분 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고, (부분) 분할 상환 선택 시 (부분) 분할 상환 단말구매 대금 채권의 양도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할 것에 동의합니다.					
				신청/가입자 (대리인)	서명 (인)

고객정보	* 고객명 (법인/사업자)	* 생년월일 (법인/사업자)	* 성별 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	* 핸드폰
		세금계산서 발급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(사업자등록번호 :)		
	* 주소	(개통 희망월 20)	우선 연락처	이메일 주소
* 명세서 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모바일	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	<input type="checkbox"/> 스마트앱	

요금납부	자동차체 (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)	예금주/카드주 : (관계:) 생년월일 (법인/사업자)
		은행(카드사)명 / 계좌(카드)번호 : (카드유효기간 : 년 월)
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충전 (선불)	충전 잔액 []원, 도달시 []원 충전 자동 충전일 매월 []일에, []원 충전
단말기 명세서 분리	카드사 / 카드번호 : (카드유효기간 : 년 월)	
※ 본인(예금/카드주 또는 가입고객)은 납부할 요금에 대해 위 계좌(카드) 번호에서 지정출금(결제)일에 인출(결제)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타인납부자에 통합청구시 추가로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		
		자동/통합 납부동의(예금주/카드주) 서명 (인)

메모

- 제공하는 장비는 기능 고도화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일격으로 관리/제어 될 수 있습니다.
- 요금 상품 및 부가서비스를 고객여사와 상관이 없이 무단 가입 및 의무가입을 설정하지 않습니다. 신청자 본인은 대출입자 등 제3자에게 고객명의의 휴대폰 (개 등) 해 주거나, 개통한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휴대폰 대출 사기 등에 (악 용)되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안내 받았으며, 아울러 신청서 내용, 뒷면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, 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명시와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, 이용약관, 위치 기반 서비스/위치 정보 서비스/통신요금 서비스/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. ※ () 는 가입자가 판매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.

본인은 위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며,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이용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일 | 20

판매자 |

서명 (인)

신청/가입자 (본인) |

서명 (인)

단말매매 및 분할상환 약정안내

mobile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핸드폰을 구입한 본인(갑)과 서비스 제공자인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(을) 핸드폰 판매자인 씨보일플러스(병)는 핸드폰 매매와 단말대금의 분할상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.

제 1 조 (단말매매 약정)

- 갑은 단말매매 약정서에 따라 병*으로 부터 단말기를 일시를, 신용으로 구매한다.
-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*이 을*,병*과 약정한 본 매매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본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채무 *갑*과 연대하여 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.
- 을*은 이 약정에 따른 단말매매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등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, 갑*은 이에 동의한다.

제 2 조 (단말대금 지급방식의 선택 및 채권양도)

- 갑*은 단말대금의 상환방법(일시상환, 분할상환, 부분분할상환)을 선택 할 수 있다. *갑*이 단말대금(부분) 분할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병*에게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하고, 단말대금(부분)분할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라면, 병*은 을*에게 단말매매채권을 양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갑*은 동의해야한다.
- 본약정은 을* 또는 병*이 핸드폰의 단말매매, 단말대금 지급방식의 선택 및 채권양도의 모든 약정사항을 직접확인하는소정의 절차를 거쳐 갑*에게매매 약정승낙을 통지하는 시점에 성립한다.
- 갑*이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을*의 갑*에 대한 팩토링(신용)제공에 따른 제반수수료 및 소요비용인 분할상환수수료는 갑*이 부담해야 한다.
- 제항의 규정(팩토링) 갑*이 단말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분할상환 선택하는 경우 분할상환금 및 분할상환 기간에 따른 분할상환 제반수수료를 을*에게 분할상환 종료 시 까지 매월 납부해야 한다.
- 을*은 분할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사용기간, 해지 제한기간 또는 명의변경제한 등을 설정할 수 없으며, 분할상환기간 중에 서비스 이용을 하지 하고자하는 갑*의 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한다.

제 3 조 (구매자의 의무)

- 갑*과 병*이 약정한 단말매매 조건 및 갑*과 을*이 약정한 단말대금 지급방식에 따른 분할상환금(을*에게 납입해야하며, 갑*의 분할상환금 납입의무는 핸드폰의 분실, 도난, 파손이나 화재, 재해 기타의 사유로 인한 훼손 또는 멸실 시에도 계속된다.
- 갑*은 분할상환금을 완납하기 전에 우편물 및 대금청구주 소, 분할상환금을 납입할 자동이체제자, 신용카드 등이 변경 되었을 때 지체없이 을*에게 통보해야 한다. 단, 갑*이 최후로 통보한 주소에 을*이 발송한 송부서류는 갑*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갑*은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을*로 부터 통지 및 송부서류 등을 접수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것에 대하여 어떠한 제기를 할 수 없다.

제 4 조 (분할 상환금의 납입방법)

- 갑*은(부분) 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발생한 분할상환금을 을*이 정하는 청구방법으로 납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.
- 갑*이 납입해야 할 분할상환금의 월납입금을 을*의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날 부터 납입해야 하며, 갑*은 분할상환기간의 최종납입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분할상환금을 일시에 납입 할 수 있다.
- 분할상환의 납입금액 *갑*이 을*의 서비스 제공을 일시지 하고자 할 경우도 *갑*은 월납입금을 납부해야 한다.
- *갑*이 납입한 금액이 납입일 현재 을*의 서비스 이용요금, 핸드폰 분할상환금 등을 포함한 채무전액을 총당하여 부족한 경우 을*은 *갑*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기일 기준으로 먼저 도래한 채무액 부터 우선 총당한다.
- 분할상환금이 제항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전액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을*이 제공하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기타사유로 분할상환금 미납 시 발생하는 손해는 갑*의 부담으로 한다.
- 을*의 청구금액이 이의가 있는 경우 *갑*은 을*에게 즉시 그 취지를 알려 잘못이 있는 경우 정산을 하도록 한다.
- 분할상환금은 단말대금과 수수료로 구성되는데, 수수료라 함은 을*이 갑*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(팩토링)에 따른 수수료로서, 분할상환결제처에 따른 업무수행 비용 및 고액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보험 가입등에 소요 된다.

제 5 조 (지연손해금)

*갑*이 약정 납기일 까지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을*은 연체한 금액의 월2%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.

제 6 조 (지위양도승낙)

- 갑*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약정에 의한 을*의 권리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.
- 분할상환기간 중에 *갑*이 핸드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을*에게 통보를 하고 을*의 동의하에 명의변경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양도 할 수 있다.
-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명의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*갑*은 채권 보전 목적저에게만 휴대폰 및 을*이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양도 할 수 있으며, 모든 분할상환 약정조건은 명의변경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.
- *갑*은 분할상환 기간중에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외한 분할상환 계약만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, *갑*이 명의 변경절차 없이 핸드폰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라도 분할상환금 납입의무는 양도 할 수 없다.
- *갑*이 핸드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양수인(양수인의 연대보증인 포함)이 분할상환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거나 양수인(양수인의 연대보증인 포함)이 신용상의 부적격 사유로 분할상환 계약의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명의 변경절차에 앞서 잔여 분할상환금을 을*에게 일시 상환해야 한다.

제 7 조 (구매자의 철회권)

- *갑*은 본 약정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약정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핸드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할상환 약정에 관한 청약 철회 할 수 있다.
- *갑*이 제 1항에 의하여 분할상환 약정을 철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1항에 정한 기간내에 을*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해야 하며,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을*에게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한 것으로 본다.
- 제 1항의 규정에도 *갑*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대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분할상환 약정을 철회 할 수 없다.

제 8 조 (기한의 이익상실)

*갑*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상환금의 납입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, 을*은 나머지 분할상환금 전액에 대하여 *갑*에게 일시에 납입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.

- *갑*이 납입금의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, 그 연체금액이 분할상환금의 10의 1을 초과하는 경우.
- *갑*이 성립에 중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이주하는 경우.

제 9 조 (약정의 해제)

갑 이 분할상환금 납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을*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회고 하였음에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을*은 본 약정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*갑*은 분할상환 거래에 관한 법 제 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.

제 10 조 (이동전화 서비스 계약해지)

- 분할상환 기간 중에 을*의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*갑*은 잔여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잔여분할 상환기간 동안 분할납입 하거나 일시납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.
- 제항의 규정에 따라 핸드폰의 소유권은 갑*에게 귀속됩니다. 다만, *갑*은 분할상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을*의 승낙없이 휴대폰을 타인에게 양도, 대여, 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.

제 11 조 (신용보험의 가입계약 체결)

- 을*은 *갑*에 대한 단말기 분할상환금 및 이용요금 채권보전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(주) 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. *갑*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보험 가입계약 체결은 연대보증 채무를 주 채무로하고 주 채무자는 *갑*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체결합니다.
- *갑*은 상기 1항 신용보험 계약체결에 필요한 모든권한을 을*에게 완전히 양도함에 동의합니다.
- *갑*은 분할상환 수수료를 분할상환 종료 시 까지 매월 을*에게 납부해야 합니다.
- 제 1항의 경우 *갑*이 을*에 대하여 분할상환금(요금)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을*은 *갑*의 납입하지 않은 분할상환금 (요금)을 서울보증보험(주)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되며, *갑*의 미납 분할 상환금(미납요금)을 대납한 서울보증보험(주)은 *갑*에게 대납금액 [미납분할상환금(미납요금)]과 연체이자(연6%)를 합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.
- *갑*이 계속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 할 경우 신용보험가입 및 지급보증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은행권 등 각 금융기관에 채무연체로 통보되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- *갑*이 분할상환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, 을은 서울보증보험(주) 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.

[요금 신용보험 약정안]

제 1 조 (신용보험 계약체결)

- 을*은 *갑*의 통신요금 미납에 다른 채권보전을 위하여 약관에 신고된 바에 따라 서울보증보험(주)과 요금 신용보험 계약을 갑을 대리하여 체결 할 수 있습니다. *갑*은 보험료(개인 2만 5천원, 법인 5만원)를 본 계약체결 시점에 을*에게 납부해야 합니다.
- 핸드폰 분할상환 약정안 제 11조 2항, 4항, 5항의 사항은 본 약정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.

제 2 조 (기타)

- 이 약정에 규정 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법령, 을*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12 조 (관할법원)

본 약정에 관하여 *갑*, 을*, 병*사이 소송의 필요가 발생 할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을*의 본사를 주소지로 하는 관할법원을 합의법원으로 합니다.

제 13 조 (해석)

이 약정에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법령, 을*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14 조 (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)

*갑*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* 또는 병*에게 그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지급거절 의사(항변권)의 행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,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.

- 분할상환계약이 불성립, 무효인 경우 항부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.
- 핸드폰의 정보 또는 일부가 *갑*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.
- *갑*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.
-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.

제 15 조 (소유권 부여)

양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*갑*이 할부금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핸드폰의 소유권은 병*에게 부여됩니다.
*갑*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병*의 승낙 없이 핸드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절권을 설정하는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.